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무공훈장 신청대상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를 유가족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형제자매의 자녀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3. “유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가. ~ 바. (개정안과 같음)
<신 설>	라. 손자녀 마. 증손자녀 바. 형제자매 <신 설>	사. 형제자매의 자녀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88

발의연월일 : 2025. 7. 23.

발 의 자 : 부승찬·조계원·최혁진
민병덕·황 희·황명선
정청래·백선희·김병기
윤후덕·이개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한정하고 있어 서훈 대상자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6·25전쟁 당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손을 남기지 않고 부모님이 사망한 공로자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공훈장을 수여할 유가족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로자의 손자녀 및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유가족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신설).

법률 제 호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손자녀

마. 증손자녀

바. 형제자매

사. 형제자매의 자녀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유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 1.·2. (현행과 같음) 3.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손자녀 마. 증손자녀 바. 형제자매 사. 형제자매의 자녀